

공 고

창녕군 공고 제2022 -910호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창 녕 군 수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 단체인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안전보안관 위촉 및 임기(안 제3조)

다. 안전보안관의 직무 및 활동 지원 등(안 제4조~제7조)

4. 관련 법규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66조의4
- 나. 「주민등록법」 제10조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5. 입법예고 기간: 2022. 5. 26. ~ 2022. 6. 15.(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녕군수 (참조: 안전치수과 안전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1) 우편: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 안전관리팀
- 2) 팩스: (055-530-1810)
- 3) 이메일: jidong@korea.kr
- 4) 직접방문: 창녕군청 4층 안전치수과

7.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안전치수과 안전관리담당(전화 055-530-1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성명(기관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반 여 부 | | 의 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 등) ① 안전보안관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군과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직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3. 군에서 축제나 행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참여
4. 군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5조(해촉)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보안관 대표단의 구성) ① 안전보안관은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대표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대표단의 부대표(이하 “부대표”라 한다)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互選)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7조(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가 위촉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해당 안전보안관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